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86 발의연월일: 2024. 12. 13.

발 의 자:최수진·성일종·임이자

구자근 · 김예지 · 김 건

신성범 • 유용원 • 윤한홍

김정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병행되며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.

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.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수요 부족과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세컨드 홈 장려 등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6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6(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) ①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미분양 주택"이라 한다)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「주택법」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6의 개

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1조의6(미분양 주택 취득에
	대한 감면) ① 내국인이 취득
	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
	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(이
	하 이 조에서 "미분양 주택"이
	라 한다)에 대하여 2029년 12
	월 31일까지 「주택법」 제54
	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
	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
	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
	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
	가 한다.
	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
	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
	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
	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
	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
	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
	<u>할 수 있다.</u>